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시 정 요 구

제 목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 처리 부적정

기 관 명 울산광역시 북구, 울주군

내 용

「사회복지법인 재무·회계규칙」 제30조의2에 규정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.

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26조의2(보험료 등의 비용명시 및 정산) 및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(행정안전부 예규)제1장제8절 보험료 사후 정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4대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그 중 국민건강보험료, 노인장기요양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는 사후 정산하여 잔액을 반납 받아야 한다고 되었다.

그런데 울산광역시 북구 소재 ○○재활원에서는 ○○○증개축공사를 준공 하면서 아래 [표]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를 납입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정산하지 아니하고 최초 계약한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6,098,140원을 지출하는 등 전체2건 6,780,640원에 대하여 계약업체에 전액 지급하였다.

[표] 국민건강보험료 등 미정산 현황

<단위 : 천원>

시설명	계약명	계약일	준공일	계약 금액	보험료				
					계	국민건강보 험료	노인장기 요양보험료	국민연금보 험료	기타 (관리비, 이윤)
○○ 재활원	○○실증 개축공사	2016.10.20	2017.02.24.	272,099	6,098	1,845	-	2,703	1,550
○○노인 요양원	○○시설보수 공사	2017.06.20.	2017.08.30.	35,582	682	224	15	328	115

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은

[시정] 부당하게 집행한 공사비 6,098,140원을 회수하시고, 앞으로 기능보강사업 추진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이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사업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울주군수는

[시정] 부당하게 집행한 공사비 682,500원을 회수하시고, 앞으로 기능보강사업 추진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이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사업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